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84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 : 임오경·박 정·김홍걸

최혜영 · 유정주 · 이수진

장철민 · 오영환 · 김민철

고용진 · 서영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·여가 시설 향유가제한됨.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지속적인 문화·여가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문화·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제11호). 법률 제 호
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문화·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·위생·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	제8조(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③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1.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
	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
	역 관리에 관한 사항
<u>11.</u> (생 략)	<u>12.</u> (현행 제11호와 같음)